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4481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4481 판결

춘천지방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나686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AAA중앙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A 담당변호사 박BA)

【피고, 상고인】 박C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B)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나6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소외

송DA으로 연대보증인이 교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90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의 상호보증 및 연대보증인 교체신청 경위를 알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변제독촉도 하지 아니한 채 연대보증인 교체신청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변제기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변제 독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